www.newsunion.co.kr



제 250호 2025.8.27 (수)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03143)

서울 종로구 율곡로2길 25

/ 전화398-3620~2 / 팩스398-3630 /

발행인 고병준·편집인 윤태현.성서호

'연합뉴스판 징비록' 사장 사과로 마침표 ·…감사규정 원상복구

"보도감사는 편집권 침해" 비판 6개월만 ...황대일 사장 "오판했다"

감사실장 인사조치 미뤄...노조 "사태수습 투쟁 이제 시작일 뿐"

'연합뉴스판 징비록'의 시작이자 '보도 감사'의 근 거였던 개정 감사규정을 사측이 원상복구했다.

노조가 '편집권 침해'라고 비판하며 감사규정 원 상복구를 촉구한 지 6개월만이다.

황대일 사장은 "취임 직후에 열정과 의욕을 앞세우다 빚어진 일인 만큼 유사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린다"며 자신의 오판을 인정했다.

기획조정실은 지난달 24일 감사규정을 포함한 사 규 개정 소식을 게시판을 통해 공지했다.

감사규정에서 변경된 조항은 제1조 감사의 목적이다.

사측은 지난해 10월 사규를 개정하며 이 조항에 '회사 업무'와 '공정성'이라는 단어를 끼워넣었는데 지난달 재차 사규를 개정, 해당 단어들을 모두 삭제해 이전 내용으로 원상복구했다.

해당 조항은 그간 감사실이 '보도의 공정성'을 감사로 따져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회사 운영의 적정성만 감사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보도 감사'를 통한 '편집권 침해' 우려도 불식됐지만, 특정 기사를 들여다보고 작성 기자에 게 경위를 따져물은 감사실장에 대한 책임 추궁은 이뤄지지 않아 사태 수습의 과제로 남았다.

앞서 황 사장은 지난해 10월 취임식 때 '노조 일 각', '정치권 뒷배에 힘입어 인사 특혜를 누리는 부 조리' 등을 언급하고 연합뉴스판 '징비록'를 작성하 겠다며 사태를 촉발했다.

'징비록'(懲毖錄)은 조선 중기의 문신 류성룡이 임진왜란 당시의 경험과 반성을 기록한 역사서로 지나간 잘못을 경계하고 훗날을 대비하자는 교훈이 담겨 있다.

황 사장은 과거 특정 기사들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지나간 잘못'이

라고 봤다. 또 이를 바로잡겠다며 노조 몰래 감사규정을 개정하고 '보도 감사'를 실행에 옮겼다.

노조는 명백한 '편집 권 침해'라며 공문과 성명 등을 통해 수차 례 비판하고 소송까지 진행했다. 이어 징비록 작성 중단과 감사규정 원상복구를 촉구했으 나, 황 사장은 이를 모 두 무시했다.

감사실장은 사내게 시판에 글을 올려 "보 도 감사는 편집권 강화 차원"이라고 얼토당토

한 궤변을 늘어놓으며 보도 감사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같은 황 사장과 감사실장의 행태는 편집국뿐만 아니라 대다수 사원들의 불신을 자초했고, 급기야 사내외 온라인 게시판에 비판글이 잇따랐다.

경영진에 대한 냉소가 사내에 팽배하자 황 사장은 지난달 14일 노조를 찾아와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이틀 뒤 사내게시판에 '징비록 중단 전말과 사장 입 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을 통해 황 사장은 "편집권 침해 논란을 불 러와 유감"이라며 "(과거 특정 기사에 대한)진상을 파악하고 정리하려는 과정에서 효율성에만 집착한 것은 저의 오판"이었다고 사실상 잘못을 시인했다.

더불어 "목적이 좋더라도 수단이 부합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며 "논란을



빚은 감사규정은 노조의 지적을 수용해 조만간 삭제 등 필요 조치를 하겠다"며 징비록 작성 중단과 감사규정 원상복구를 공식화했다.

이에 노조는 '황대일 사장의 늦은 공개 사과…결 자해지 행동 보여야'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황 사 장의 입장 표명을 사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연합뉴스판 징비록 작성의 실무 책임자인 감사실장에 대한 인사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며 '결자해지'의 자세로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병준 노조위원장은 "사태 수습은 이제 시작했을 뿐이다. 감사실장에 대한 인사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사원들의 불신은 사그라지지 않는다"며 "황 사장이 인사조치를 약속한 만큼 조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노보 2025.8.27 (수)

편집국, 파견 남발 대책…"사전 고지하고 한 달로 제한" 노조 통보 의무 도외시…올해만 파견 4번 간 사원도

편집국이 앞으로 사원 파견 시 일주일 전에 고지하고 파견기간을 한 달로 제한하기로 했다.

편집국은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의 사원 파견 지침을 전 부서에 공지했다.

그간 파견은 대형 이슈가 터질 때마다 편집국 각 부서가 사원을 각출한 뒤 특정 출입처나 현장에 보 내 집중 취재하는 방식으로 활용돼왔다.

대형 이슈에 발빠르게 대응한다는 장점이 있지 만, 긴급하게 파견이 이뤄지다 보니 인사부 통보와 인사발령 공지는 빈번하게 생략됐고, 노조 통보도 이뤄지지 않았다. 단체협약 제29조(통보의무)에 따르면 회사는 조 합원에 대한 인사결정을 할 때 조합에 즉시 통보하 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의무는 긴급하게 대응한다는 이유로 유야무야됐고 최근에는 파견이 잦아지면서 불 감증까지 확산했다.

급기야 모 부서에서 휴가자의 공백을 타 부서 사 원 파견으로 메우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파견이 남 발되면서 모 기자는 올해 파견만 4번이나 다녀왔 다

노조는 통보의무를 도외시하는 편집국 내 풍조가

'파견 남발'을 불렀고 편집국 사원들의 사기를 떨어 트렸다고 판단,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통보의무를 철저히 지키고 파견 사원의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회사는 노조 지적을 수용하고 파견 시 일주일 전에 대상 사원에게 알리고 파견기간도 한 달로 제한하는 대책을 시행했다.

노조는 파견에 따른 사원들의 피해가 있는지 여 부를 주시하며 발생 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3년만의 채용' 경력 • 신입 17명 노조교육 "노동존중 공감"

3년 만의 인력채용으로 입사한 경력 • 신입사원 17명이 지난 5일 회사 대회의실에서 노조 집행부와 처음으로 대면하고 노조교육을 받았다.

노조는 환영 인사를 건네고 집행부를 소개했으며 노조 활동과 현안을 설명한 뒤 많은 관심을 당부했 다.

특히 노조 홈페이지 게시판과 오픈채팅 등 다양 한 채널로 사원들과 소통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동참을 호소했다.

노조교육에서는 '깨어있는 노동자의 조직된 힘! 노동조합'을 주제로 노무사 특강이 진행됐다.

대다수 경력 • 신입사원들은 노동이 존중받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조직된 힘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공감했다.

교육 이후 마련된 노조 저녁식사 자리에서 경력 • 신입사원들은 "이전 회사에는 노조가 아예 없어 아쉬웠는데 연합뉴스에는 소통할 수 있는 노조가 있어 입사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왕성한활동을 다짐했다.



이달 1일 입사한 경력 14명 • 신입 3명 등 총 17 명의 사원들은 노조 교육을 포함한 닷새간의 오리 엔테이션을 마치고 지난 8일 각 부서로 배치돼 업 무를 시작했다.

'노조위원장과 실시간 상담' 1:1 익명채팅방 개설 노동조건 개선 민원 채널 확장…누구나 손쉽게 입장

노조가 소통 채널을 늘리기 위해 지난 1일 1:1 익명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이 채팅방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제안부터 소소한 민원까지 모두 직접 노조위원장과 상담할 수있는 열린 공간이다.

노조원 또는 비노조원 구분 없이 누구나 채팅 방에 들어와 말을 걸면 노조위원장이 답변한다. 상담자는 채팅방에 입장할 때 프로필을 익명으로 설정할 수 있어 어떤 일이든 부담 없이 상담할수 있다.

또 1:1로 노조위원장과 대화가 이뤄져 상담 내용이 유출될 가능성도 없다.

상담은 평일 오전 11시~오후 6시까지 실시간 으로 이뤄지며 나머지 시간대는 사후 답변 방식 으로 진행된다.

이 채팅방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검색에서 '1:1 채팅' 항목을 선택한 뒤 검색창에 '연합뉴스 노조' 를 넣고 검색하면 입장할 수 있다.

각 부서 노조 대의원들에게 전파한 링크와 QR 코드를 통해서도 입장이 가능하다.

지배구조개선특위 활동 확대···"진흥법 개정 총의 모을 것" 매주 임시회의 열고 방안 논의···세미나·토론회 준비

연합뉴스의 공영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조 지배 구조개선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활동을 늘리기 로 했다.

특위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진흥 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원 총의를 모을 계획 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매월 1차례씩 열었던 임시회의를 당분간 매주 1차례씩 진행하고 진흥법 개정과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행 진흥법은 연합뉴스 사장 선출과 경영 감독 의 책임을 맡는 최대 주주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 7명 중 5명을 정부와 국회가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이사 대다수를 정치권이 선출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권이 사장을 선출하 는 셈이다.

이는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구조로 불공정보도, 근로조건 악화, 사내 민주주의 퇴보 등 악순환을 초래해왔다.

특위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격할 이사 추천 제 도, 국민이 참여하는 사장추천위원회, 안정적인 공 적 기능 수행을 위한 정부 구독료 확립 등 연합뉴스 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 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부 세미나,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진행해 구성원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방송법 개정안은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추천 몫을 줄이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 국 민들을 참여케하는 등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격하 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편성위원회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법제화도 포함됐다.

[성명]

연합뉴스만 남았다···마지막 남은 공영언론 정치후견 지배구조 이제는 바꿔야 - 방송법개정안 통과에 부쳐 -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서 정치적 후견주의를 일부 덜어낸 방송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1987년 민주화 이래 38년 만에 공영방송 의 지배구조가 정치권으로부터 조금이나마 자유로울 수 있는 첫 발을 뗐다.

이 법안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언론 노동자가 해고와 탄압을 무릅쓰고 투쟁했다. 회사를 떠나거나 세상을 등진 이들도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는 이번 방송법 개정의 취지가 공영언론의 경영진 선임과 보도 과정에서 정치 권력의 개입을 걷 어내 구성원에게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민에게는 대표자의 선 발 권한을 돌려주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 비록 2년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보다 후퇴했다는 평가도 있으나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역사적이라고 할 만하다.

다만 이번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연합뉴스 구성원들은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다.

이번에 방송3법이 차례로 국회 문턱을 넘고 나면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는 정치권에 예속된 지배구조를 그대로 남겨놓은 법으로 운영되는 유일한 공영언론으로 남는다.

2003년 제정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진흥법)은 2009년 한시법에서 일반법로 전환된 이래 단 한 차례도 제대로 개정된바 없다. 사장 선출과 경영 감독의 책임을 맡는 최대 주주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 7명 중 5명을 여전히 정부와 국회가 추천한다.

절대다수의 이사를 정치권이 임명하는 구조가 공고한 탓에 지난 23년간 사장 자리를 노리는 이들이 정치권에 줄을 대려 이리저리 몰려 다니기 예사였다. 낙점을 받아 사장에 임명된 이후에도 정권의 눈치를 봐야 하는 질곡이 이어져왔다.

기억한다. 지난 윤석열 정권이 정부 구독료와 공적기능 수행에

따른 예산 보전분의 80% 이상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삭감했다. 예산 지원을 빌미로 공영언론을 마음대로 통제하려 한 것이다.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지부는 그간 지배구조 개선 특위를 가동해 진흥법 개정 논의를 벌여왔다. 시민사회·학계와 연계해 새 진흥법이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해 토의하기도 했다.

이제는 연합뉴스 구성원 모두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고 총 의를 물을 것이다.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격할 이사 추전 제도 개선, 공정한 사장 선출을 위한 사장 추천위원회와 국민 참여단 가동, 안정적인 공적 기능 수행을 위한 정부 구독료 확립,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보도를 위한 편집권 독립 등을 보장하는 조항이 진흥법에 명시되도록 투쟁에 나설 것이다.

편집권 독립을 위해 103일간 벌였던 2012년 파업 당시와 같은 비장한 각오로 언론 노동자 동지들과 연대하여 연합뉴스를 반드시 국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이다.

> 2025.8.5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연합노보 2025.8.27 (수)

